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24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 임직원의 정년 연장 등(안 제21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8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2. 13.

다. 회부연월일 : 2025. 2.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정년을 법률에서 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65세로 연장하여 규정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 임직원의 정년 연장 등(안 제21조의2 신설)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①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및 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의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안 제21조의2제1항), ②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며(안 제21조의2제2항), ③소속 임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진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안 제21조의2제3항), ④우주항공청은 처우개선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 근무여건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안 제21조의2제4항)하려는 것임.

○ 항우연·천문연 임직원의 정년은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62세, 2028년부터 2029년까지는 64세, 2030년부터는 65세로 순차적으로 연장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2(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정년 등) ①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중 대

현행	개정안
	<u>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u> ② <u>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은 소속 임직원(정년에 도달한 임직원을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정년 이후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u> ③ <u>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수 있다.</u> ④ <u>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처우개선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⑤ <u>제2항에 따른 제도의 운영, 제3항에 따른 처우개선협의체의 설치·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부 칙></u>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1</u>

현행	개정안
	<u>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u> <u>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u> <u>원에 소속된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임직원의 정년은 2026년부터</u> <u>2027년까지는 62세, 2028년부터 2029</u> <u>년까지는 64세, 2030년부터는 65세로</u> <u>한다.</u>

나. 검토의견

□ 우선 항우연 및 천문연의 법적지위 및 성질에 대해 살펴보면, 두 기관은 정부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공법상 특수법인이고, 우주항공청의 산하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받음.

○ 항우연·천문연은 현재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 「우주항공청법」 ”) 제19조¹⁾ 및 제20조²⁾에 근거하여 설립된 항공우주청 산하 기관임.

○ 또한 우주항공청장은 두 연구원의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고위공무원이 두 연구원의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

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공우주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사는 두 연구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의결권한을 가지므로, 두 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짐.

□ 다음으로, 현행법에 따른 항우연·천문연 임직원의 정년을 살펴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조³⁾에 따라 정년의 하한은 60세이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사규정」 제59조⁴⁾·「한국천문연구원 인사규정」 제50조⁵⁾에서 정년을 61세로 규정하고 있음.

○ 개별법⁶⁾에서 정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60세), 교육공무원(62세, 교원인 교육공무원은 65세)을 제외한 근로자의 정년의 하한은 「고령자고용법」을 적용받아 60세임.

○ 항우연·천문연의 임직원은 각각의 인사규정에서 정년을 61세로 정하고 있고, 항우연의 경우에는 우수연구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 참고로, 항우연·천문연은 2024년 1월 이전까지 과학기술분야 정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사규정」 제59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1세로 한다. 단, 우수연구원으로 임용된 자는 65세로 한다.

② 정년퇴직일은 제1항의 정년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

5) 「한국천문연구원 인사규정」 제50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1세로 한다.

② 직원은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 당연 퇴직한다.

6)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부출연연구기관이면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 받았으나, 「우주항공청법」이 제정되면서 각자의 인사규정을 정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음.

○ 두 기관은 「우주항공청법」이 제정된 2024년 1월 이전까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았음.

○ 또한, 2024년 1월까지 「과기출연기관법」을 적용받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었음.

○ 2024년 1월에 「우주항공청법」이 제정되어 항우연·천문연이 「과기출연기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항우연·천문연은 각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을 정하고 있음.

□ 항우연·천문연 임직원 등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첫째, 연구개발인력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하여 연구자들이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한국과학기술원과 같은 대학의 교원과 정년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연구개발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한 인력 채용에 도움이 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공무원,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51, 2208120)」이 발의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들의 심사 상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출연(연)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우수연구자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며, 다만 법령 개정에는 있어서는 현행 관련 규정 체계, 대내외 형평성, 사회적 수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에 기반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항우연·천문연에 소속된 임직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

해서는, 법률에서 처우개선협의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항우연·천문연 소속 임직원들의 처우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항우연·천문연의 처우개선협의체를 관리·감독기관인 우주
항공청에 두도록 법률에 규정할 경우,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
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현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항
우연·천문연 간 비공식 제도개선 TF를 상시운영하여 연구기관
인건비 및 처우개선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참고로, 우주항공청은 항우연·천문연 근로자의 임금·복지 등 처
우 관련 사항은 노사관계 현행법에 따라 노사 당사자 간 동등
한 지위에서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등을 통해 결정하는 자율적
협의 내역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우선적으로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령상의 처우개선협
의체를 별도로 두려고 할 때는 현행법상 존재하는 절차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6